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567

제출일자: 2024. 8. 22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(2023. 11. 22. 공포 및 2024. 11. 23. 시행)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제6호의2)
- 나.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(현행 제3조제1항 삭제)
- 다. 건강진단결과서 등 발급 수수료를 3,000원으로 명시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- 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- 2) 입법예고(2024, 7, 30, ~ 2024, 8, 19.) 결과: 별도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"를 "진료 시"로, "따른 진료수가 기준"을 "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의2 중 "「국민건강 보험법」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"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다목의 금액란 중 "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"을 "3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

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<u>「국</u>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<u>따른 진료수가</u> 기준에 따른다.

② (생 략)
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
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
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
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
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
면제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~ 6. (생 략)
- 6의2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 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비 중 본인부담금(「국민건강 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 상만 해당한다.)
- 7. ~ 9. (생 략)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 관련)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고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-|
| 및 진단서, | 다.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| |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|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 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'다'항 에 '마'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 다. |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 관련)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l.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, 제증명 | 다.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| 1통 | <u>3,000원</u> |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 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'다'항 에 '마'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 다. |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2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써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발생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 연 락 처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

[시행 2023. 7. 2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9호, 2023. 7. 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,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1997.09.27, 2011.5.13., 2016.5.10.>

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

-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00.11.24, 2011.5.13, 2016.5.10.>
-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<개정 2000.11.24., 2005.12.28.>
- 1.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
- 2. 삭제<2023.7.20.>
- 3. 유료접종
- 4. 검사
- 5. 삭제<2011.05.13>
- 6. 의과 진료비
- 7. 삭제<2006.12.29>
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

-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개정 1997.9.27., 2005.12.28., 2011.5.13., 2016.5.10.>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1.5.13., 2006.12.29., 2011.5.13., 2016.5.10., 2019.7.19., 2020.9.18., 2023.7.20.>
- 1.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
- 2.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
- 3. 저소득층 주민,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
- 4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
- 5.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
- 6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
- 6의2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(「국민건강 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.)
- 7.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임무수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归도검사의 수수료
- 8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-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
- ③ 삭제<2016.5.10.>

제4조 삭제<2023.7.20.>

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3.7.20.]

제6조(허위신청)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법령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

[시행 2024. 11. 23.] [총리령 제1916호, 2023. 11. 22., 타법개정]

| [0 2024. 11. 20.] [0 4 0 4 101022, 2020. 11. 22., 4 8 0 |
|---|
| |
| 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 |
|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8., 2023. 11. 22.>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